[양식 제24호]

(귀 호	화 신 ^년	고 서 ^월 일)	*					을 참고하고, 기 바랍니다.
	귀호	화 전에							
① 귀 화 자	부	성명 (성)) /(명)	국적(등록기준지)			
	7			주민등록번호			-		
	兄	성명	성) /(명)	국적(-	등록기준지)			
				-	등록번호			_	
	배우자	성명	성) /(명)	국적(등록기준지					
	다 린 ɔ ɔ		 조리 레드르 카시키\	주민등록번호					
	등록기준지(가 족 관계등록창설지) 주소								
	이구어		2 () 2						
		자포함)	정) / (명)	본			성별	1남	<u></u> 2여
	명 원지음의 한글표기) /(명)	(한자)		주민등록 번 호		-
②신분에 관한 사항									
③귀화허가연월일 1				년	월		일		
④수반국적 취 특자	성		명						귀화자와의
	외국어 (한자포함)		원지음의 한글표기	│ 생년	년월일 	부의	기성명	모의성명	관 계
			(성) /(명)						
	(성) / (명) (성		(성) / (명)						
	(성) / (명) (성		(성) / (명)						
	(성) / (명) (성		(성) / (명)						
⑤기타사항									
		성 명	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-						-
⑥신	고인	자 격	① 보인 ②법정대리인 ③ 기타(자격:))
		주 소				전화		이메일	
⑦제출인		성 명			주민등록	- 번호	<u>ŏ</u> –		

^{**}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 성 방 법

- ※ 본 신고서는 2008. 8. 31.까지 귀화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.
- ①란: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(등록기준지)란에 등록기준지 를 기재합니다.
 - :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 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 - : 귀화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(한자포함)란에는 귀화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(한자포함)로 기재하여야 합니다(예컨대,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). 다만, 우리나라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나,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.
 - : 귀화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우리나라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나,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. 한편,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(예: 거민신분증, 호구부 등)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.
 - : 귀화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(한자)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 하지 않습니다.
- ②란: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④란: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.
- ⑤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,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⑦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(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).
- 2.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.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3. 귀화자의 부(父)·모(母)·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